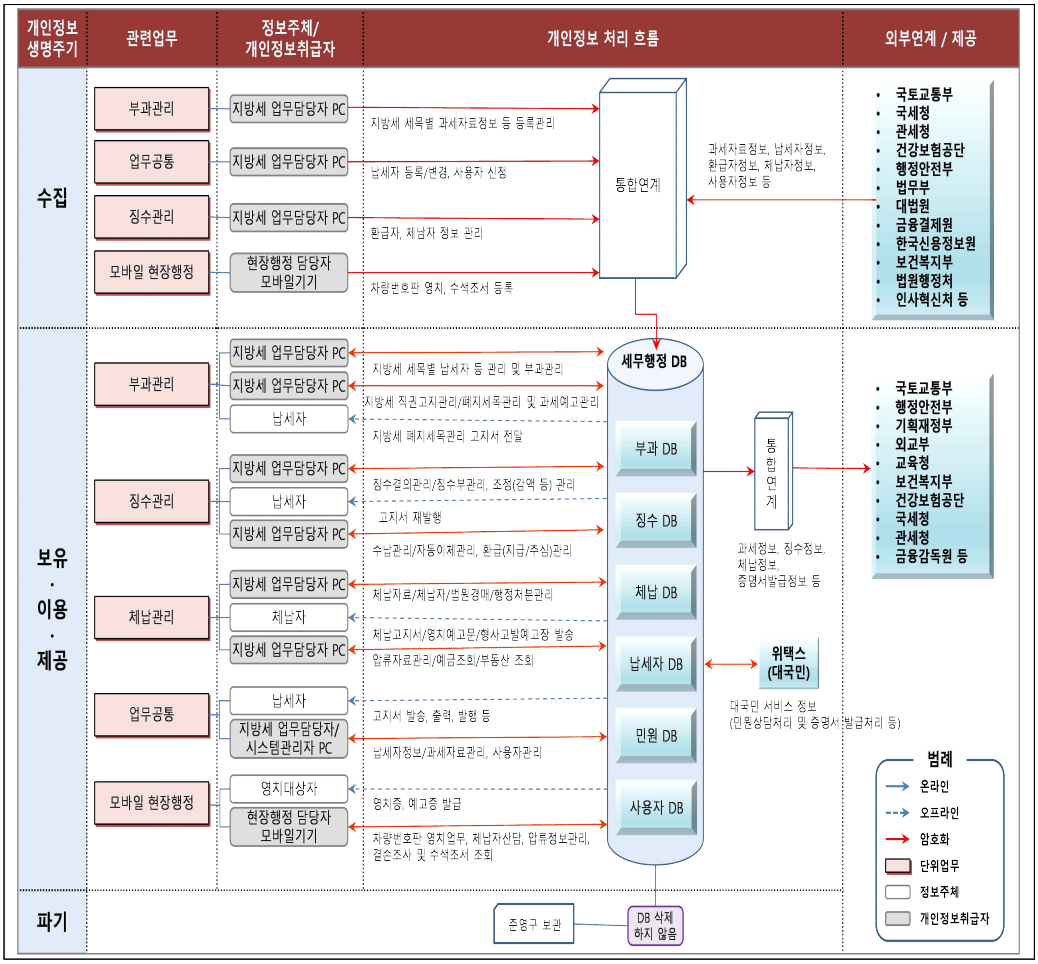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본청(무안군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한국정보기술단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04.22
~
2026.05.29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.징수.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현시점 기준으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가까운 시점에 정보주체의 수가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중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2">지방세기본법 제135조(지방세 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• 지방세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</td><td colspan="6">1. 개인정보 처리 흐름
-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</td></tr>
</table>

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환급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

- 본청(무안군)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시·군의 지방세 부과·징수 현황 관리, 세입 분석, 통계 확인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

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


영향평가기준	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	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 항목을 가감하여 구성함 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'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단, 행정안전부 "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"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" 에서 제시한 "자치단체 점검내용"을 포함하여 평가함. 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의 13개 항목 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의 16개 항목 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주요
평가기준</td><td>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 보호법령"을 반영
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을 반영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
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준에
따른 개인정보
침해요인
분석·평가</td><td><u>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은『지방세법』제49조, 제130조,『지방세기본법』제135조,『지방세기본법』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
<u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/u>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
-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
-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, 위탁된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, 개인정보의 위탁 항목, 목적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</td><td>주요
위험요소에
따른
개선조치
방안</td><td>- 개인정보 위탁업체 공개(3.4.1) :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업무명, 수탁기관(재수탁사), 계약기간 등 공개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
따른
정보주체
인지사항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10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
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.
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평가항목 중 이행 13건, 부분이행 1건, 미이행 0건, 해당없음 2건으로 평가되어 이행하고 있음
-『개인정보처리방침』(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)에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함
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27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</td></tr>
</table>